

# 『재단법인 드림파크문화재단』 정관

재단법인 드림파크문화재단

# 『재단법인 드림파크문화재단』 정 관

|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|
|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|
| 제정 | 2007. 2. 23. | 정관 | 제1호  |
| 개정 | 2008. 1. 8.  | 정관 | 제2호  |
| 개정 | 2008. 3. 17. | 정관 | 제3호  |
| 개정 | 2012. 2. 28. | 정관 | 제4호  |
| 개정 | 2012.10. 26. | 정관 | 제5호  |
| 개정 | 2015. 2. 6.  | 정관 | 제6호  |
| 개정 | 2016. 7. 25. | 정관 | 제7호  |
| 개정 | 2018. 3. 19. | 정관 | 제8호  |
| 개정 | 2019. 4. 4.  | 정관 | 제9호  |
| 개정 | 2021. 8. 2.  | 정관 | 제10호 |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드림파크문화재단”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.)  
이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재단은 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지역  
주민 및 환경분야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과 매립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  
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주사무소 소재지)** 재단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  
지에 두며,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분소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(사업)**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  
사업을 수행한다.

1. 매립지 주변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
2. 매립지 주변지역주민 및 환경 분야 종사자에 대한 복리증진사업
3. 매립지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주민협력활동 지원
4. 신재생에너지 관련 작품의 재배·활용 및 생태탐방 사업
5. 매립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
6. 기타 본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각호의 부대  
사업

②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③재단은 제2항의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출자를 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 다만, 그 수익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,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다. <개정 2021. 8. 2>

## 제2장 임 원

제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재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이사장 1인
2.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(이사장 포함)
3. 감사 2인 이하

②모든 임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선임직 이사 중 1인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임으로 한다.<개정 2012. 2. 28>

제6조(이사) ①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.

②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.

1.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<개정 2015. 2. 6>
2.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본부장<개정 2012. 2. 28>, <개정 2019. 4. 4>

제7조(임원의 임기)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각각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6. 7. 25>

제8조(임원의 선임) ①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②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,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③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4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**제10조(임원의 직무)**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재단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**제11조(임원의 해임)**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
1.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
5. 「민법」 및 「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

**제12조(이사장 직무대행)** ①이사장이 유고 또는 결위된 때에는 제6조 제2항 2호 규정의 당연직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9. 4. 4>

②제1항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### 제3장 이 사 회

**제13조(이사회 구성)**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며,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14조(이사회 기능)** 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.

1. 재단의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차입금 및 주요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직제, 회계, 인사 등 재단운영에 필요한 주요규정의 제정과 개정
5.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6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7. 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8.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5조(이사회 소집)**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. <개정 2008. 1. 8>

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 목적,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④이사장은 제2항의 임시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이사회 소집 특례)** ①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의결정족수)**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이사회 의사는 정관의 변경, 재단의 해산 등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③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 다만,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시작 전까지 이사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의결제척사유)**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

**제19조(의사록)** 이사회는 의사진행 및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재산과 회계

**제20조(재산의 구분)**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“별지”와 같다.

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재산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.<전문개정 2008. 1. 8>

**제21조(재산의 관리)** ①제20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재단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
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.

**제22조(재산의 평가)**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따른다.  
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
**제23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**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, 후원금, 찬조금, 기부금,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.

**제24조(회계의 구분)** ①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
② 「법인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.

③제2항에 따라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령에 준용하여 배분한다.

**제25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** ①재단은 당해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8. 1. 8>

②재단은 당해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**제26조(회계연도)**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27조(차입금)** 재단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

**제28조(세계잉여금)**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
**제29조(임원의 보수)**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30조(임원등에 재산 대여금지)** ①재단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1. 재단의 설립발기인
2. 재단의 임원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4. 재단의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## 제5장 조 직

**제31조(사무국)** ①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②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32조(직원의 임면 등)** ①사무국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

②사무국 직원의 급여와 복무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.

**제33조(자문위원)**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## 제6장 보 칙

**제34조(정관의 변경)**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35조(해산)**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
**제36조(청산인)** 재단의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.

**제37조(청산종결의 신고)**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할 때에는 「민법」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.

**제38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재단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.

**제39조(운영규정)**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40조(준용규정)**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, 「비송사건절차법」, 「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**제41조(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)** 재단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0. 26>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재단의 설립 이전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당시의 임원) 재단 설립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| 직 위 | 성 명 | 주 소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이사장 | 윤서성 |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  |     |
| 이 사 | 전병성 |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1-13 |     |
| 이 사 | 정홍식 | 서울시 관악구 신림7동 1735  |     |
| 이 사 | 이기호 | 인천시 서구 오류동 675     |     |
| 이 사 | 윤석준 |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108    |     |
| 이 사 | 정종준 |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서해@    |     |
| 이 사 | 최상일 |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9-1  |     |
| 감 사 | 조성오 |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      |     |

2007년 2월 12일

「재단법인 드림파크문화재단」 설립추진위원회

위 원 장 윤 서 성 (인)

위 원 전 병 성 (인)

위 원 정 홍 식 (인)

위 원 이 기 호 (인)

|     |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|
| 위 원 | 윤 석 준 (인) |
| 위 원 | 정 종 준 (인) |
| 위 원 | 최 상 일 (인) |
| 위 원 | 조 성 오 (인) |

### 부 칙 <개정 2008. 1. 8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15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은 2007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### 부 칙 <개정 2008. 3. 17>

이 정관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<개정 2012. 2. 28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<개정 2012. 10. 26 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5. 2. 6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6. 7. 25 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8. 3. 19 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9. 4. 4 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1. 8. 2 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목록 1]

##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

### 1. 기본재산 총괄표

(2007년 2월 12일 설립)

| 재 산 명 | 수 량 | 평 가 액(원)  | 비 고 |
|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|
| 현 금   |     | 1,000,000 |     |
| 합 계   |     | 1,000,000 |     |

### 2. 기본재산 세부목록표

| 재 산 명 | 종 별<br>(소재지·지목) | 수 량<br>(지적) | 단 가 | 평 가 액(원) 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|
| 현 금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1,000,000 |     |
| 합 계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1,000,000 |     |

[별지목록 2] <개정 2008. 1. 8>

## 제1차 개정 기본재산목록

### 1. 기본재산 총괄표

(2008년 1월 8일 개정)

| 재 산 명 | 수 량 | 평 가 액(원)    | 비 고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|
| 현 금   |     | 171,000,000 |     |
| 합 계   |     | 171,000,000 |     |

### 2. 기본재산 세부목록표

| 재 산 명 | 종 별<br>(소재지·지목) | 수 량<br>(지적) | 단 가 | 평 가 액(원)   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|
| 현 금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171,000,000 |     |
| 합 계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171,000,000 |     |

[별지목록 3] <개정 2008. 3. 17 >

## 제2차 개정 기본재산목록

### 1. 기본재산 총괄표

(2008년 3월 17일 개정)

| 재 산 명 | 수 량 | 평 가 액(원)    | 비 고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|
| 현 금   |     | 640,700,000 |     |
| 합 계   |     | 640,700,000 |     |

### 2. 기본재산 세부목록표

| 재 산 명 | 종 별<br>(소재지·지목) | 수 량<br>(지적) | 단 가 | 평 가 액(원)   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|
| 현 금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640,700,000 |     |
| 합 계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640,700,000 |     |



[별지목록 4] <개정 2016. 7. 25 >

## 현재 기본재산목록

### 1. 기본재산 총괄표

(2016년 7월 25일 현재)

| 재 산 명 | 수 량 | 평 가 액(원)    | 비 고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|
| 현 금   |     | 424,116,720 |     |
| 합 계   |     | 424,116,720 |     |

### 2. 기본재산 세부목록표

| 재 산 명 | 종 별<br>(소재지·지목) | 수 량<br>(지적) | 단 가 | 평 가 액(원)   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|
| 현 금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424,116,720 |     |
| 합 계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424,116,720 |     |

[별지목록 5] <개정 2018. 3. 19 >

## 현재 기본재산목록

### 1. 기본재산 총괄표

(2018년 3월 19일 현재)

| 재 산 명 | 수 량 | 평 가 액(원)    | 비 고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|
| 현 금   |     | 640,700,000 |     |
| 합 계   |     | 640,700,000 |     |

### 2. 기본재산 세부목록표

| 재 산 명 | 종 별<br>(소재지·지목) | 수 량<br>(지적) | 단 가 | 평 가 액(원)   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|
| 현 금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640,700,000 |     |
| 합 계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640,700,000 |     |